

21.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서 설

(1) 개 설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른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³⁸³⁾ 따라서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

38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등

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³⁸⁴⁾ 즉,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종 등기명의자와 중간 등기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최종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³⁸⁵⁾

(3) 주요판례

㉠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³⁸⁶⁾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 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 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³⁸⁷⁾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38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385)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38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38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³⁸⁸⁾

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³⁸⁹⁾

㉕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³⁹⁰⁾

(4) 청구취지의 표시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438 전 4,124㎡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과실 없는 점유자인지 여부

38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38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39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편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악의의 점유가 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상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48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6/13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0. 10. 18. 접수 제1914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정명의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매매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를

그 후 사정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으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확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1. 별지 목록 제 1, 2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는 별지 목록 제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는 별지 목록 제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피고 양○○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8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시행 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 후 경료된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 된 경우 제3취득자가 피 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부동산
 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
 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채권자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취득
 자로서는 채권자에게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산 359-3 임야 25,000㎡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산 359-3 임야 25,000㎡에 관하여 1977. 3. 일자불상
 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
 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 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고 본 사례.(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714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확인,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33 임야 9,421㎡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1939.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 삼림법(융회2.1.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이라면 위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이와 다른 내용의 연고관계를 가지는 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가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11.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79조에 의하면,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에 있어 위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지적제출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조사서상에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특정 개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 비교란에도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재방법을 위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해당 임야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가. 피고 정○정은 제1부동산에 대한,
 - 나. 피고 김○희는 제2부동산에 대한,
 - 다. 피고 윤○성은 제3부동산에 대한,
 - 라. 피고 황○홍은 제4부동산에 대한,
 - 마. 피고 김○학은 제5부동산에 대한,
 - 바. 피고 정○수는 제6부동산에 대한,
 - 사. 피고 윤○화는 제7부동산에 대한,
 - 아. 피고 박○자는 제8부동산에 대한,
 각 별지 2기재 각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19146 판결)

다.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 채권양도통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김동일[金東一, 주소 : 서울 ○○구 ○○로 123(○○동)]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직접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도록 소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직접 통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³⁹¹⁾ 이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³⁹²⁾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³⁹³⁾

☐ 채권양도통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백○○[주소 : 서울 ○○구 ○○로 123-4(○○동)]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의 표시

피고가 소외 백○○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구 ○○동 196-3(○○로196길 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0층 지하실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4층 283.99㎡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채권. 끝.

[참조판례]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출자자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방법으로서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해산되는 조합에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채무가 없으며 동업자의 출자재산이 다른 동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는 경우, 출자 조합원은

39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392)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39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출자 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참조판례] 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③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④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판례]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판례] 채권양수 사실의 입증책임

채권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 채권양도통지 청구

1. 피고와 소외 홍○○[주소 : 서울 ○○구 ○○로 664(○○동)]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주소 : 서울 ○○구 ○○로 616, 113동 1805호(○○동, ○○아파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차인 갑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행위가 전차인 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을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임차인이 갑에게 양도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위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한 사례.
(서울동부 1997.12.5. 선고 97가합1516 판결)

☐ 권리양도통지

피고는 소외 한국○○○○연구원[서울 ○○구 ○○로 139(○○동)]에게 양자 사이에 2014. 12.경 체결한 기술개발계약에 기하여 고감도 엑스선 ○○○용 형광체의 제조기술 개발 연구결과(KnowHow 및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특허권포함)와 연구수행 후 발생한 시제품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 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판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공1997하, 2302)

(2) 법률상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

(가) 광업권

❖ 광업권지분이전등록 청구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지분 별로 피고 갑, 을 및 원고에게 별지(2)목록 기재 지분 별로 별지 (3)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① 위 기재례는 갑, 을, 병 3인의 공동광업권 중 병의 지분을 양수한 원고가 지분이전등록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예이다.
- ② 광업법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며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17조 제5항, 제30조) 광업권의 지분 이전에 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공동광업권자들 중의 1인이 다른 공동광업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을 포함한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양수인을 포함하여 양도 후 새로이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의 명의로 광업권 자체(지분이 아닌)의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⁹⁴⁾³⁹⁵⁾ 따라서 갑, 을, 병 3인의 공동광업권 중 병의 지분을 양수한 원고가 지분이전등록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재례와 같이 갑, 을, 병 3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³⁹⁶⁾

394)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 본법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며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로 되어 있으나 등록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광업권자의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496, 1497 판결)

395) 광업권 지분 이전등록의 방법 : 공동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 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은,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의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의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등록이 아닌 지분이전등록만으로서, 지분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1495 판결)

396)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6. 10.4. 선고 66다1079 판결)

☐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청구(시효취득, 증여)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권○○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 1광업권에 관한 ○○○부 광업권등록사무소 1985. 2. 21. 접수 제696호 광업권이전등록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 2광업권에 관한 ○○○부 광업권등록사무소 1985. 2. 21. 접수 제677호 광업권이전등록의,
 - 다) 별지 목록 기재 제 3광업권에 관한 ○○○부 광업권등록사무소 1985. 2. 21. 접수 제698호 광업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광 업 권 목 록

1. 광업원부 등록번호 제12478호
소재지 충북 ○○군 ○○면
광종명 금은광
2. 광업원부 등록번호 제24587호
소재지 충북 ○○군 ○○면
광업지적 설천지적 제119호
광종명 금은동 연아연광
3. 광업원부 등록번호 제65748호
소재지 충북 ○○군 ○○면, 전북 ○○군 ○○면
광업지적 설천지적 제113호
광종명 금은동 연아연광

[참조판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 광업권이전등록 청구(매매, 작업방해배제,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이 강원도 ○○군 ○○읍 소재 별지 도면 표시 ○○광업지적 제1132호, 제1133호, 제1134호 구역에서 그 지상에 산재하는 모든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철광석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그 철광석의 선광 및 작업방해배제청구와 관계 철광석의 소유권확인과 선광 및 작업배제청구를 함께 구하였다가 제1심 판결 후 그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하였다 하여도 위 작업방해배제청구의 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법 1980.6.12. 선고 79나2030 판결)

☐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청구(시효취득, 증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1973. 4. 4. 접수 제2111호로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주식회사가 목적하는 사업과 영업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업재산 없이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회사가 그 영업재산을 잃음으로써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그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광업권의 시효취득가부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 대하여 그 광업권에 기하여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에 걸친 조광권설정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제3자에게 광물을 채굴케 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준점유가 이루어진 것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준점유개시후 10년이 경과하면 광업권을 시효취득한다.(1988.9.22. 88가합7663)

☐ 광업권탈퇴 청구(광업권 양도약정, 탈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1984. 2. 7. 접수 제1692호로써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광업권이전등록사항 중 피고명의로 탈퇴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광업권에 관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갑 등 4인 명의로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 사이에는 광업권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장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③ 공동광업권 상호 간에 탈퇴원인에 관한 특약의 허부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공동광업권 상호 간에 탈퇴원인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특약은 허용된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나) 특허권

☐ 전용실시권등록말소 청구(특허권 침해배제)

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특허발명에 대한 199 . . . 특허청 접수 제200호로서 경료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최○○은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제 1 목 록

특허등록번호 제00호 199 . . . 출원, 199 년 원서 제00호, 199 . . . 공고, 199 . . . 자로 등록된 미생물포자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존속기간 199 . . .부터 199 . . . 까지)

제 2 목 록

피고 최○○가 ○○시 ○○로 123, ○○발효연구소 공장에서 위 제1목록에 기재된 특허의 방법을 실시하여 제조하는 분말종국

☐ 특허권등록말소 청구(지분양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등록 1985. 4. 29. 접수 제2197호로서 마친 같은 달 25. 특허권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등록의 말소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고 특허권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도행위는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특허권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의 등록으로서 등록양수인은 등록양도인에게 그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987.12.10. 87가합127 판결)

[참조판례] ①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②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③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다) 상표권

☐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표권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5. 6. 14.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권의 1/2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상표권의 표시

1. 상표등록 제100000호

등록일자 198 . . .

상표권자 피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명 및 구분

제2류 당근, 배추, 무우

2. 상표등록 제200000호

등록일자 199 . . .

상표권자 피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명 및 구분

제2류 마늘, 파, 부추

[참조판례] 상표법상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와의 관계 및 기본상표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 후 새로이 등록된 연합상표에 미치는지 여부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4520 판결)

☐ 상표이전등록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상표 549호 로열(royal)에 대하여 1968. 9. 19. ○○부 특허국 상표등록 제1235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명의를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이미 주

말되어 있는 경우에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당부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로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로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288 판결)

☐ 상표권통상사용권등록 청구

1. 피고 파산자 망 ○○○의 파산관재인 ○○○는 피고 주식회사 한강에게,
 - (1) 별지 1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한강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2항의 각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
 - (1)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3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은,
 - (2) 원고 김○○에게 별지 5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 (3) 원고 ○○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 7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은,
 - (4)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9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0 기재와 같은,
 - (5) 원고 ○○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 11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2 기재와 같은,
 - (6)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13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4 기재와 같은,
 - (7)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15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6 기재와 같은,
 - (8)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17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18 기재와 같은,
 - (9) 원고 주○○에게 별지 19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0 기재와 같은,
 - (10) 원고 ○○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 21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2 기재와 같은,
 - (11)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23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4 기재와 같은,
 - (12) 원고 ○○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 25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6 기재와 같은,
 - (13) 원고 주식회사 ○○에게 별지 27목록 기재 각 상표에 관하여 별지 28 기재와 같은,
 각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서울지법 1996.6.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 : 확정)

(라) 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 청구(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1. 실용신안등록

번 호	12345	12346
유 별	A91G9/16	A01G9/14
고안의 명칭	조립용 골재	조립용 골재
등록 년월일		
실용신안권자	서울 ○○구 ○○로 52(○○동) 강○○	좌동
전용실시권설정 등록접수일 및 번호	199 . . . (161호)	199 . . . (제148호)
실 시 권 자	서울 ○○구 ○○로 11(○○동) 정○○	좌동

2. 디자인등록

번 호	23456	32341	42546
유 별	38	39	40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	조립용 골재	조립용 골재	조립용 골재
등록년월일			
디자인권리자	서울 ○○구 ○○로 52(○○동) 강○○	좌동	좌동
전용실시권등록 접수일 및 번호	199 . . (제104)	199 . . (제105)	199 . . (제106)
실 시 권 자	서울 ○○구 ○○로 11(○○동) 정○○	좌동	좌동

[참조판례] 조합이 그 목적인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정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산된 경우라면
출자자는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남부지원 1985.12.10. 선고
85가합1212 판결)

(마)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사업소 2007. 1. 10. 접수 제563391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고 최○○은 같은 사업소 2007. 3. 17. 접수 제56623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인정하는 범위 갑이 을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을 앞으로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와 갑의 인장만 날인하고 나머지는 백지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용지 각 1통 및 상호 합의공증각서 2통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갑이 을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수여의 범위도 위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1,000,000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최고액만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그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위임한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을이 수여 받은 대리인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북부지원 1987.12.2. 선고 87가합520 판결)

[참조판례] [1] 건설기계 판매대리계약 중 대리상에 불과한 판매 회사에게 미회수 매매대금에 관한 무조건적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판매 회사가 수령하는 수수료의 액수에 비하여 고객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판매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생산자가 미리 매매대금을 리스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나름대로의 채권확보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회사에게 금융비용까지 합한 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건설기계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판매 회사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 중장비를 장기간의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정도가 심하여 판매된 중장비 자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미수채권의 회수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므로, 건설기계 생산자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고가 중장비 판매를 위임받은 대리상으로서 적어도 민법 제681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매수인과 연대보증인들의 변제자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위임자인 건설기계 생산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판결)

(바) 선 박

❖ 선박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며(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이 준용된다(선박등기법 제5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며(선박등기법 제2조),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일반 동산과 같이 취급된다(상법 제745조). 선박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선박등기법 제3조).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매매계약 무효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1.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닦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부산지법 1998.5. 선고 98가합1754 판결)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8. 7. 접수 제11087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선박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선박인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4. 접수 제12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중공업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3. 7. 접수 제1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2. 5. 22. 접수 제135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3은 같은 법원 2006. 2. 8. 접수 제134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1]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선박경매절차 취소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갑 소유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병 회사, 정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무의 근저당권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사) 입 목

☐ 입목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입목에 관하여 1976. 3. 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78호로서 경료된 각 입목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차적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입목등기를, 수종 밤나무, 수령 18년생, 수량 1,007본, 조사년도 1986년도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입목등기를 수종 밤나무 20년생, 수령 20년생, 수량 122본, 조사년도 1986년도로 한 각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차적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입목은 각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참조판례] 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정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등기된 입목전부 또는 일정한 지역내의 입목이 벌채 기타 사유로 멸실된 때에 그 입목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등기의 표제부를 정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그 입목의 일부가 죽거나 생성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만 그 때마다 그 입목의 수량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구고법 1988.1.14. 선고 86나1651 판결)

[참조판례]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입목소유권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아) 기 타

❖ 프로그램등록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 가. 피고 최○준은 2014. 7. 1.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번호 94-00-10-0000으로 등록한○○기록계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의,
 - 나. 피고 주식회사 ○○○전자는 2016. 6. 5.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번호 R96-00-10-0000로 등록한 ○○기록계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의 각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판례]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